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제유가 및 식품원료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53,749톤에서 263,749톤으로, 참깨의 시장접근 물량을 현행 64,000톤에서 67,000톤으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5,787 톤	77,962 톤	263,749 톤
1201	10		종자			
1201	10	1000	콩나물용			
1201	10	9000	기타			
1201	90		기타			
1201	90	3000	콩나물용			
1201	90	9000	기타			

별표 중 120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	--	--	--------------------------------	--	--	--

			상관없다)			
1207	40	0000	참깨	6,731	60,269	67,000
				톤	톤	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증량물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증량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